

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(임호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148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7. 15.

발 의 자 : 임호선 · 권철승 · 전용기
서삼석 · 송재봉 · 조계원
정준호 · 장종태 · 김주영
전종덕 · 서영교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낙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낙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낙시어선을 조종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이와 유사하게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낙시어선을 조종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면서도 약물복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.

이에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,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기사 면허의 취소·정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약물복용 후 낙시어선 조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

지 및 제31조의2 신설 등).

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

낙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(이하 이 조에서 “관계 공무원”이라 한다)은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.

1. 경찰공무원

2. 시·군·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

③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(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)이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는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에 대하여는 해당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동의를 받아 소변 또는 모발 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.

⑤ 관계 공무원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가 제1항 후단에 따른 약물복용의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 대하여 조종·승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1조의2(해기사 면허의 취소·정지 요청) 시·도경찰청장,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선박직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·호소 등 「해상교통안전법」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경우
2.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·호소 등 「해상교통안전법」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3.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·호소 등 「해상교통안전법」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복용의 상태에

있는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경우

4.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·호소 등 「해상교통안전법」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약물복용의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
제53조제2항제6호의2 중 “제31조를”을 “제31조제1항을”로 하고, 같은 항 제6호의3을 제6호의4로 하며, 같은 항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6의3.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·호소 등 「해상교통안전법」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약물복용의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1조(약물복용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) (생 략)	제31조(약물복용의 상태에서의 조종 금지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 람(이하 이 조에서 “관계 공무원 원”이라 한다)은 <u>낙시어선업자 및 선원이 제1항을 위반하였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약물복용의 상 태에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낙시어선업자 및 선원 은 그 측정에 따라야 한다.</u>
	1. <u>경찰공무원</u>
	2. <u>시·군·구 소속 공무원 중 수상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 람</u>
<u><신 설></u>	③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(근무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 은 제외한다)이 <u>약물복용의 상 태에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 표를 지니고 이를 해당 낙시어 선업자 및 선원에게 보여 주어</u>

<신 설>

야 한다.

④ 제2항에 따른 측정의 결과에 불복하는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에 대하여는 해당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의 동의를 받아 소변 또는 모발 검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⑤ 관계 공무원은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이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측정결과가 제1항 후단에 따른 약물복용의 상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 대하여 조종·승선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<신 설>

제31조의2(해기사 면허의 취소·정지 요청) 시·도경찰청장,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선박직원법」 제4조에 따른 해기사 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당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해기사 면허의 효력을 정지

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
할 수 없는 하천·호소 등
「해상교통안전법」의 적용대
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0조제
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
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
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낚
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 낚
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경우

2.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
할 수 없는 하천·호소 등
「해상교통안전법」의 적용대
상이 아닌 장소에서 술에 취
한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
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30조
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
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
3.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
할 수 없는 하천·호소 등
「해상교통안전법」의 적용대
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1조제
1항을 위반하여 약물복용의
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
거나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
낚시어선업자 또는 선원에게

제53조(벌칙) ① (생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1. ~ 6. (생략)

6의2.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·호소 등 「해상교통안전법」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제31조를 위반하여 약물복용의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거나 약물복용의 상태에 있는 자에게 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자

<신설>

낚시어선을 조종하게 한 경우

4.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·호소 등 「해상교통안전법」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약물복용의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31조 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
제53조(벌칙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6의2. -----

-----제31조제1항을-----

6의3. 해상항행선박이 항행을 계속할 수 없는 하천·호소

6의3. (생략) 7. ~ 9. (생략)	등 「해상교통안전법」의 적용대상이 아닌 장소에서 약물 복용의 상태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제3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측정에 따르지 아니한 자 6의4. (현행 제6호의3과 같음) 7. ~ 9.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